

# 북한인권법안

【 김영우의원 대표발의 】

검토보고서

2014. 11.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 【 목 차 】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가. 제안이유 .....	1
나. 주요내용 .....	2
3. 검토의견 .....	4
가. 총    괄 .....	4
(1) 제17대국회 이후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발의경과 및 현황 .....	4
(2) 북한인권 관련 법안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	6
(3)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현황 및 주요내용 .....	8
나. 조항별 검토 .....	10
(1) 법률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10
(2)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안 제3조) .....	11
(3) 북한인권자문위원회(안 제5조) .....	11
(4) 인도적 지원(안 제7조) .....	12
(5)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안 제8조제2항) .....	14
(6)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운영·임원의 구성(안 제9조안·제10조 및 안 제11조) .....	15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안 제12조) .....	19
(8)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안 제16조) .....	21



## 1. 제안경위

가. 발의자 : 김영우 의원 등 34인

나. 발의일자 : 2014. 11. 21

다. 회부일자 : 2014. 11. 2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 역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음. 북한인권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사안임.

그러나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 국제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북한주민들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의약품 등이 부족하여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에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함(안 제3조).
- (3)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4)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 (5)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함(안 제7조).

- (6)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7)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9조).
- (8)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 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 3. 검토의견

#### 가. 총괄

##### (1) 제17대국회 이후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발의 경과 및 현황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제17대국회에서 김문수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이래 제19대 국회인 현재까지 동 제정안을 포함하여 총 19개<sup>1)</sup>의 법안이 발의되었음.

제17대 국회에서는 황진하의원으로부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법안」, 정형근의원으로부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됨.

제18대 국회에서는 황우여의원, 윤상현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법안」, 황진하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증진법안」, 홍일표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으로부터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되어 김동철의원안<sup>2)</sup>을 제외한 4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북한인권법안(대안)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업위원회로 넘겨졌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됨.

1) 제19대국회 심재권의원이 발의하였다가 철회한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 제외.

2) 김동철의원안의 경우 4개의 법안이 대안으로 우리위원회를 통과한 후 발의됨.



제19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등 총 12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그 중 심재권의원이 발의한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이 철회되고 현재 11개의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발의 현황 >

구분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발의일자
제17대 (3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황진하의원	2005. 6.27
	북한인권법안	김문수의원	2005. 8.1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형근의원	2007.10. 1
제18대 (5개)	북한인권법안	황우여의원	2008. 7. 4
	북한인권증진법안	황진하의원	2008. 7.21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일표의원	2008.11.11
	북한인권법안	윤상현의원	2008.12.26
	북한민생인권법안	김동철의원	2011. 6.14
제19대 (11개)	북한인권법안	윤상현의원	2012. 6. 1
	북한인권법안	황진하의원	2012. 6.15
	북한인권법안	이인재의원	2012. 8.20
	북한인권법안	조명철의원	2012. 9. 5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철회)	심재권의원	2012.11.15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	2012.11.19
	북한인권법안	심윤조의원	2013. 3.29
	북한민생인권법안	윤후덕의원	2013. 7.25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인재근의원	2013. 9.17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재권의원	2013.11. 4
	북한인권증진법안	심재권의원	2014. 4.28
북한인권법안	김영우의원	2014.11.21	

## (2) 북한인권 관련 법안 심사 경과 및 주요 내용

제19대국회 동안 우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심사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26일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sup>3)</sup>를 개최하였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차례<sup>4)</sup>에 걸쳐 북한인권 관련법에 관하여 심사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그동안 북한인권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음.

### < 북한 인권법 제정 관련 주요 논의 내용 >

구 분	주요 논의 내용
제311회(정기회) 전체회의 제2차('12. 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건의 「북한인권법안」 상정(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의원안)에 따른 대체토론</li> <li>○ 북한의 인권,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고 있지 않음. 다만, 북한의 인권 증진방안에 대해서 방법론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유연성을 갖고 합의점을 모색할 필요.</li> <li>○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해 이견을 가질 국민은 아무도 없으나, 문제는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보며 그 인권의 내용을 무엇으로 보며,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북한주민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을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필요.</li> </ul>
제315회(임시회) 전체회의 제4차('13. 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인권법안」 (심윤조의원안),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 (심재권의원안),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의원안) 상정에 따른 대체토론</li> </ul>

3) 2013. 6.26(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4인(김귀옥 한성대 교수, 김영순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이사,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을 초청하여 「북한인권법안」 5건(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의원)과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의원)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토론 및 논의를 진행함.

4) 제321회국회(임시회)제3차 법안심사소위('13.12.24) / 제322회국회(임시회)제1차 법안심사소위('14. 2.19) / 제2차 법안심사소위('14.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건의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되, 심사는 공청회를 마친 후 실시토록 함.</li> </ul>
<p>제321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 제3차('13.1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접근, 유엔 인권선언의 A규약에 해당되는 생존권, 문화권, 경제권을 위한 대대적인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 인권 개선의 검토 필요</li> <li>○ 우리가 보존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기록이 언젠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인권법 제정 필요</li> <li>○ 북한인권기록은 통일부나 통일부 관련 유관 단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li> <li>○ 북한 영유아 지원법과 모자보건지원 법률도 북한인권법에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li> </ul>
<p>제322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 제1차('14. 2.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 진행을 위해 논의 방향 제안(정문헌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의 북한인권법안,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의원),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의원)과 3개의 인도적 지원법안을 포함한 총 10개의 법안을 망라해서 논의하는 방안</li> <li>· 5개의 북한인권법안과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의원),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의원)을 먼저 논의하고 3건의 인도적 지원법안은 따로 논의하는 방안</li> </ul> </li> <li>○ 영유아 지원법을 북한인권법과 묶어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야의 논란이 적은 영유아 지원법부터 논의할 필요</li> <li>○ 10개의 북한 인권 관련법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법안을 축조심사의 형식을 빌려 논의기로 함.</li> </ul>
<p>제322회(임시회) 법안심사소위 제2차('14. 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에서는 당내의 인권 법안을 하나로 모으고 보완하여 당론으로 내기 위해 TF팀이 꾸려져 의견 수렴과 회의를 진행 중에 있음.</li> <li>○ 서로의 이견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논의 하는 차원에서 축조심사의 형식을 빌린 논의 시작할 필요</li> <li>○ 5건의 북한인권법,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 및 북한민생인권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3건의 인도적 지원법안은 앞의 7건의 심사가 끝난 다음 심사기로 함.</li> <li>○ 7건(북한인권법안 5건, 북한 주민 인권증진법안 및 북한민생인권법안)의 법안 축조심사가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진행됨.</li> </ul>

### (3)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 현황 및 주요내용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동 제정안과 관련 있는 5건의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북한민생인권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5건의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바, 심사 경과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 현황 >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발의일자	경과	주요내용
북한인권법안	윤상현의원	2012. 6. 1	2012. 9.19 상정, 법안소위 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인권자문위원회</li> <li>•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li> <li>• 북한인권재단 설치(심윤조의원안 제외)</li> <li>•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li> <li>• 북한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li> </ul>
	황진하의원	2012. 6.15	"	
	이인제의원	2012. 8.20	"	
	조명철의원	2012, 9. 5	"	
	심윤조의원	2013. 3.29	2013. 4.17 상정, 법안소위 계류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	심재권의원	2012.11.15	2013. 4.17 상정, 법안소위 계류/ 2014. 4.25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농업개발위원회 설치</li> <li>• 인도적 지원센터 설치</li> </ul>
북한민생인권법안	윤후덕의원	2013. 7.25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소위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주의 정보센터 설치</li> <li>• 인도주의 자문위원회 설치</li> </ul>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	정청래의원	2012.11.19	2013. 4.17 상정, 법안소위 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지원</li> <li>•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의 신고</li> <li>•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li> </ul>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인재근의원	2013. 9.17	2013.11.28 상정, 법안소위 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지원 추진협의회 설치</li> <li>• 인도적지원 원칙 명시</li> <li>• 인도적지원 참여 민간단체 지원</li> <li>• 인도적지원 관련 물품의 반출 신고</li> </ul>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재권의원	2013.11. 4	2013.11.28 상정, 법안소위 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 없이 추진</li> <li>• 북한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의 모니터링</li> <li>• 북한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의 신고</li> </ul>
북한인권증진법안	심재권의원	2014. 4.28	2014. 4.29 회부, 미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인권대화 추진 및 인권대화 자문위원회 설치</li> <li>• 인도적지원협의회 설치</li> <li>• 인권정보센터 설치</li> </ul>

## 나. 조항별 검토

### (1) 법률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1조 및 제2조는 법률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7조와 안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인도적 지원원칙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므로 이를 목적규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5)</sup>.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윤상현의원안, 황진하의원안, 이인제의원안의 목적규정에는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2)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안 제3조)

안 제3조에서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는 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3) 북한인권자문위원회(안 제5조)

안 제5조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통일부에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5조(북한인권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북한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시,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하여 위원회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4) 인도적 지원(안 제7조)

안 제7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 인도기준 준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의 이용 금지 등 네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어야 한다.
2.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4.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지원 외에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인도적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단체 간의 역할을 조정한다.

이는 그동안 대북지원에 있어 논란이 되어 온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다만, 네 가지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북한당국과의 협력을 취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제2항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조(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를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와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교부에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sup>6)</sup>에 의한 대외직명대사로 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있어 북한인권 업무와 역할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sup>7)</sup>.

6)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6)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운영·임원의 구성(안 제9조·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안 제9조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제3항제1호다목에서는 재단의 사업으로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의 활동이 정치적 편향성을 떨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지원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사업으로 기 제출된 4건8)의 「북한인권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7) 현 인권대외직명대사의 임무는 인권관련 각종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홍보하고,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등 북한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8) 윤상현의원안, 황진하의원안, 이인재의원안, 조명철의원안에는 재단의 설립을 포함하고 있으나, 심윤조의원안의 경우에는 북한인권재단에 관한 사항이 없음.

제9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라. 북한인권 관련 교육·홍보 및 출판

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활동

바.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 인도적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활동

마. 통일부장관의 위탁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바. 정부 및 민간에 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사.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현행 「남북관계발전법」도 제9조제1항9)과 제10조제1항10)에서

9) 「남북관계발전법」 제9조 (인도적문제 해결) ①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10) 「남북관계발전법」 제10조 (북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으므로 우선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11)</sup>.

안 제11조의 재단의 임원 구성에서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명의 이사를 두며 이사장의 자격요건은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하고 있음.

제11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장은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장을 제외한 재단 이사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sup>12)</sup>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사

11) 인제근의원이 2013년 9월 17일 대표발의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활동, 의류·식량 등의 물품 지원 및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 지원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12) 북한인권재단 사업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 자격 요건도 이사장과 같이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해 이사에 대한 임명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이 정치적 편향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추천에 있어 국회 교섭단체에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국회 교섭단체 추천에 의한 구성 입법례 >

-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⑦

- 「선거관리위원회법」

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생략)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③~⑬ (생략)

## (7) 북한인권기록보존소(안 제12조)

안 제12조는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2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 침해사례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소재와 관련하여 기 제출된 5건의 「북한인권법안」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인제의원안, 조명철의원안, 심윤조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윤상현의원안은 북한인권재단에, 황진하의원안은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건의 법률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규정 비교 〉

김영우의원안	윤상현의원안	황진하의원안	이인제의원안	조명철의원안	심윤조의원안
제12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 접수·기록·보존하기 위하여 <b>법무부</b> 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③ (생략)	제10조( <b>북한인권재단</b> 의 설립) ① · ② (생략)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략)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운영 3.~8.(생략) ④ (생략)	제12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b>법무부</b> 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③ (생략)	제14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b>국가인권위원회</b> 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④ (생략)	제13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관련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b>국가인권위원회</b> 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③ (생략)	제9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 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b>국가인권위원회</b> 소속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② (생략)

이와 같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소재와 관련하여서는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법무부는 수사·형사소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복권지원이 가능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이 향후 북한인권기록을 바탕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수사 등의 업무와 연속성을 갖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조사기능



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는 업무 외에 향후 수사 권한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소재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8)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안 제16조)

안 제16조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 국가적인 협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협조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관계 기관 협조 관련 유사 입법례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17조(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 당 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종규
연 락 처	02-788-4395 (FAX 02-788-3567)